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08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경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 · 김준형 · 윤종오 · 허성무 · 강준현 · 손 솔
김영배 · 황운하 · 한창민 · 차규근 · 최혁진 · 황명선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5. 11. 4.

3. 회 부 일 : 2025. 11. 5.

※ 의안번호 : 139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을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를 세종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22조의5 삭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u>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u>」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u>국회세종의사당</u>”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소재지) 국회는 「<u>행정수도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u>」에 따른 세종특별시에 둔다.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u><삭제></u>

2021. 10. 14. 「국회법」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대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에 따른 불편 및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¹⁾

헌행법 제22조의4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2023. 10. 6.)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실,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국회도서관 분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규정함.²⁾

동 규칙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로, 부지면적은 약 631,000㎡임.³⁾ 2026년 7월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 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관한 총사업비 조정이 진행됨.⁴⁾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9.24.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

2)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이전 대상 위원회 등)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1.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3)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
2. 부지 면적: 약 631,000㎡

4)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를 3조 7,415억원으로 국회에 통보하였으며,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홍보관, 교육시설 등 비청사 시설물에 관한 사업비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임.

개정안은 국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국회 분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려는 것으로, 국회의사당의 기능이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행정수도특별법안」 제정⁵⁾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⁶⁾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⁷⁾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시 헌법재판

5)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0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0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써 세종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세종특별시의 지위와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등 전원재판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요지 中]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중략)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중략)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성문의 조항과 다른 것은 성문의 수도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 다만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되어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중략)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소는 서울이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헌법기관 특히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국회·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은 「행정수도특별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05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며,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1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